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
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21738호, 2026.6.2. 일부개정, 2026.12.3. 시행)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자치분권·균형성장 기여자에 대한 포상·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(안 제17조의2 신설)
- 나.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하고, 균형성장영향평가 담당관 지정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(안 제17조의3 신설)
- 다. 기존 지역발전투자협약이 특별협약(‘초광역특별협약’ 및 ‘지역발전투자협약’)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규제특례, 연구개발 및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 근거 마련 등 행정·재정 지원사항 정비(안 제41조 개정)
- 라. 특별협약 및 통합공모 제도 도입에 따라 특별협약에 포함될 기본 사항(대상사업 내용, 참여주체 간 역할, 투자계획 등)과 통합공모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한 통합공모 예외 사항 등 규정(안 제42조 개정)

마. 초광역협력사업 및 협약의 범부처 협의·조정·집행을 전담하는 범부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)

- 지방시대위 내 협의체 설치, 위원 구성, 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마련

바. 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·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권역별 초광역 공동사업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2조의4, 제42조의5, 제42조의6 신설)

- 초광역권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 설치,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, 초광역협력사업 기획 및 발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며,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약이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

사. 기타

- 국토부·기획처가 「자치분권균형성장법」 소관 업무에 관한 법령 제·개정 및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(안 제69조 개정)

-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다목(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) 위임사항 관련 규정(안 제78조제2항 및 별표4 신설)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이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에서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내 ‘지역균형발전’을 ‘균형성장’으로 용어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없 음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”을 “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법 제9조제3항”을 “법 제9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9조제4항”을 “법 제9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법 제10조”를 각각 “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”로 한다.

제15조제4항 및 제5항 중 “지역균형발전시책”을 각각 “균형성장시책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“지역균형발전시책”을 각각 “균형성장시책”으로 한다.

제2장에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포상·포상금 지급) ① 정부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제15조제1항의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
2.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는 경우

② 포상금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른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.

제17조의3(균형성장영향평가) ① 지방시대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, 계획 및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

1.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정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정책
2.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주기(週期) 이상인 계획
3.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
4.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균형성장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

하는 정책, 계획 또는 사업

②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균형성장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균형성장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) 및 민간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정부는 매년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1. 균형성장영향평가 업무 지원
2. 균형성장영향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·연구
3.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

는 사항

⑥ 그 밖에 균형성장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.

제3장의 제목 “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”을 “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법 제31조”를 “법 제31조제1항”으로, “지역발전투자협약(이하 “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”)을 “초광역특별협약(이하 “초광역특별협약”)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”을 “초광역특별협약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79조제2항제1호”를 “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”를 “균형성장지원센터”로 한다.

3.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특례,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, 인력 양성, 정주 여건 개선 등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42조의 제목 “(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)”을 “(특별협약의 체결 및 통합공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(이하 “특별협약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대상 사업의 내용과 범위
2. 대상 사업의 기간 및 추진 일정

3. 참여 주체의 역할 및 책임

4. 소요 예산, 재원 분담 등 투자 계획

5. 그 밖에 특별협약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

②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공모 목적 및 일정

2. 공모 사업의 범위 및 내용

3. 공모 참여 기준 및 방법

4. 대상 사업의 평가 기준 및 방법

5.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

③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되거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산업 육성에 관련된 사업 등 지역 여건 및 특성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

2.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거나 지정한 경우로 사업의 성격상 공모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

3.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협의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할 경우

4. 그 밖에 통합 공모가 사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

제4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9항) 중 “제8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지역발전투자협약”을 “특별협약”으로, “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”를 “지방시대위원회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2(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②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국무조정실 차장, 재정경제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교육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농림축산식품부차관, 산업통상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, 중소벤처기업부차관, 기획예산처차관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

2.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,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

3. 그 밖에 초광역협력사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

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

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 또는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추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지방시대 기획단장이 된다.

⑤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42조의3(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의 기능)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과 관련된 전략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업무 협의·조정이 필요한 사항
3.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

제42조의4(초광역공동사업단의 설치) 초광역공동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광역권별로 설치한다.

제42조의5(초광역공동사업단의 구성) ① 사업단은 초광역권별로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1.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
2.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소속 혁신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·직

원

3. 그 밖에 초광역협력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

제42조의6(초광역공동사업단의 운영)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초광역협력사업 기획 및 발굴과 관련된 사항
2.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, 이행 및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

② 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약이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3조제6호 및 제7호 중 “지역균형발전”을 각각 “균형성장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4항제5호 중 “지역균형발전”을 “균형성장”으로 한다.

제54조제1항제2호라목 중 “균형발전”을 “균형성장”으로 한다.

제62조제2항 중 “지역균형발전”을 “균형성장”으로 한다.

제63조제2항 중 “지역균형발전”을 “균형성장”으로 한다.

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균형발전”을 “균형성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“지역균형발전시책”을 “균형성장시책”으로 한다.

제66조제1항제4호 중 “지역균형발전”을 “균형성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지역균형발전시책”을 “균형성장시책”으로 한다.

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균형발전”을 “균형성장”으로 한다.

제68조제2항 단서 중 “지역균형발전 업무”를 “균형성장 업무”로, “지역균형발전과”를 “균형성장과”로 한다.

제69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지역균형발전”을 각각 “균형성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지역균형발전시책”을 “균형성장시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지역균형발전정책”을 “균형성장정책”으로, “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”를 “균형성장지원센터”로 한다.

1.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법령의 제정·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
2.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·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

제75조제1항 중 “지역균형발전”을 “균형성장”으로 한다.

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.

제79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지역균형발전”을 각각 “균형성장”으로 한다.

제84조제1항 중 “지역균형발전시책”을 “균형성장시책”으로 한다.

제85조제5호 중 “지역균형발전정책”을 “균형성장정책”으로, “지역균형발전에의”를 “균형성장에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7조의2, 제17조의3, 제41조, 제42조, 제42조의2, 제42조의3, 제42조의4, 제42조의5, 제4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고,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제2호가목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제34호 및 제35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

관한 특별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- 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- 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및 제2항제2호다목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-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3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- ⑧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항제4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-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- 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제3호, 제42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- ⑪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3제1항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-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및 제12조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- 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6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- 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에 따

른 지방시대 종합계획

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

별표 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계획

⑮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⑯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17조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9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⑱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⑲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⑳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8제1항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㉒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별표 5 제3호과목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

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하고, 별표 8의2의 비고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7호 및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67조의3제1항제12호다목1) 및 라목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㉖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㉗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5항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㉙ 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본문 및 제9조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㉚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의2제1항제2호가목, 제99조의4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 및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4)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㉝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10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㉕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, 제5조제2항제8호, 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8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㉖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4제1항 후단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㉗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제12호 본문, 같은 조 제18호, 제78조의2제5호, 제102조제7항제12호사목 및 같은 조 제8항제12호, 제110조의2제1항제11호가목 및 같은 조 제1항제12호나목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6제4항제2호나목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㉚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㉛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9항 및 제119조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0호, 제11호,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74조에 따른

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

11.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74조에 따른

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

12.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74조에 따른

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받기반정리 사업

④②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8.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

④③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④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④⑤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3제2항제10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

한다.

별표 2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른

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시설의 시설

④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 24. 거주(F-2)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관의 과목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④⑦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④⑧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제81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④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30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”을 각각 “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”으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종전의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4]

초광역권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(제78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여권 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
2. 초·중등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
 - 가. 5세 아동 무상교육·보육비 지원
 - 나. 장애아동 교육 지원
3.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
 - 가. 기본형 공익직접직불
 - 나. 친환경농업 직접지불
 - 다.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
4.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
 - 가.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
 - 나. 저소득 모자·부자가정 지원
 - 다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·교육급여·의료급여 지원
5. 수질·대기오염 방지,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
 - 가.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
 - 나. 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
 - 다.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
6.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「국가재정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(이하 “지방시대위원회”라 한다)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	
② ~ ④ (생략)	
제12조(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)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(이하 “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.	제12조(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) ① ----- 법 제9조제4항 -----
② (생략)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	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법 제9조제5항 -----

해당 연도의 초광역권발전시행 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 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3조(시행계획의 협의·조정)	제13조(시행계획의 협의·조정)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초광역 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<u>법 제10조</u> 에 따른 협의·조정을 요청받은 다 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다른 초 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·조정을 요 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 의·조정을 끝내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<u>법 제9조제3항</u> <u>및 제10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, 초광역 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<u>법 제10조</u> 에 따른 협의·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 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법 제9조제3항 및</u> <u>제10조</u> ----- ----- -----.
제15조(시·도 시행계획등의 종합 평가) ① ~ ③ (생략)	제15조(시·도 시행계획등의 종합 평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	④ -----

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부 진한 사업과 시·도별 또는 초 광역권별 <u>지역균형발전시책</u>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 시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<u>균형성장시책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<u>지역균형발전시 책</u>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에 대 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할 수 있다.	⑤ ----- ----- ----- <u>균형성장시책</u> --- ----- ----- -----.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17조(평가자문단의 설치 등) ① (생략)	제17조(평가자문단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평가자문단은 <u>지역균형발전 시책</u>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 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 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, 평가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위 원장이 위촉한다.	② ----- <u>균형성장시책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지방시대위원회는 <u>지역균형 발전시책</u>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 관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	④ ----- <u>균형성장시 책</u> ----- ----- -----

른 전문평가기관(이하 “전문평가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한다.

⑤·⑥ (생 략)

<신 설>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포상·포상금 지급) ①

정부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제15조제1항의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
2.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는 경우

② 포상금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른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.

제17조의3(균형성장영향평가) ①

지방시대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, 계획 및

<신 설>

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

1.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정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정책
2.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주기(週期) 이상인 계획
3.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
4.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균형성장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, 계획 또는 사업

②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균형성장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균형성장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) 및 민간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정부는 매년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

한다.

1. 균형성장영향평가 업무 지원
2. 균형성장영향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·연구
3.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

⑥ 그 밖에 균형성장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.

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
제41조(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) ① -----

----- 법
제31조제1항-- 초광역특별협약
(이하 “초광역특별협약”-----

----.
② -----

----- 초광역특

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·보조 또는 융자 등에 필요한 지역의 수요와 성과 달성도를 고려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

2. (생략)

<신설>

③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8조제6항의 지역혁신지원센터, 제69조제4항의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또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, 제69조제5항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로 하여금 초광역협력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42조(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)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(이하 “지역

별협약-----

-----.

1.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특례,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, 인력 양성, 정주 여건 개선 등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③ -----

---- 균형성장지원센터-----

-----.

제42조(특별협약의 체계 및 통합 공모)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

발전투자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(이하 이 조에서 “협약안”이라 한다)을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즉시 송부해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

특별협약(이하 “특별협약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대상 사업의 내용과 범위

2. 대상 사업의 기간 및 추진 일정

3. 참여 주체의 역할 및 책임

4. 소요 예산, 재원 분담 등 투자 계획

5. 그 밖에 특별협약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

②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공모 목적 및 일정

2. 공모 사업의 범위 및 내용

3. 공모 참여 기준 및 방법

4. 대상 사업의 평가 기준 및 방법

5.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

③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

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, 이를 기	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법 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되거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육성에 관련된 사업 등 지역여건 및 특성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2.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거나 지정한 경우로 사업의 성격상 공모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 3.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협의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한 경우 4. 그 밖에 통합 공모가 사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<삭 제>		초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(이하 이 조에서 “체결안”이라 한다)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. ⑤ 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.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체결안을 송부해야 한다.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. ⑦ 시·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·도 관할 구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 사업을 정해야 한다.	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
---	---	--	--	---

1. 지방시대 종합계획과의 관계
2.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
3.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
4.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
5. 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④ ----- 제3항-----
----- 특별협약-----
----- 지방시대위원회가 -----
----- . 다만, 법 제31조제1항
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경
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
·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
이 정한다.

제42조의2(범부처 초광역추진협
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추진협
의체의 위원장은 법제62조제1
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
원장이 된다.

②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
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국무조정실 차장, 재정경제부

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교육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농림축산식품부차관, 산업통상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, 중소벤처기업부차관, 기획예산처차관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

2.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
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, 도와
특별자치도의 부지사

3. 그 밖에 초광역협력사업과
관련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
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시
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
는 민간위원

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
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과
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
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
관·법인·단체의 장 또는 민간
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
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추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

	는 지방시대 기획단장이 된다. ⑤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제42조의3(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의 기능)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 1.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과 관련된 전략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2.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의·조정이 필요한 사항 3.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			이내로 구성한다.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. 1.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.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소속 혁신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·직원 3. 그 밖에 초광역협력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제42조의6(초광역공동사업단의 운영)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초광역협력사업 기획 및 발굴과 관련된 사항 2.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, 이행 및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 ② 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약이나 조례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<신 설>	제42조의4(초광역공동사업단의 설치) 초광역공동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광역권별로 설치한다.		<신 설>	
<신 설>	제42조의5(초광역공동사업단의 구성) ① 사업단은 초광역권별로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30인		제43조(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)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	제43조(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) -----

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.	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혁신융 복합단지 등 <u>지역균형발전</u> 을 위하여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 정된 특수지역의 여건에 관한 사항	6. ----- ----- <u>균형성장</u> ----- ----- ----- --
7. 그 밖에 <u>지역균형발전</u> 에 관 한 지표개발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 ·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	7. ----- <u>균형성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
제46조(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 성 등) ① ~ ③ (생 략)	제46조(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 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④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합 및 <u>지역균형발전</u> 에 관한 사항	5. ----- ----- <u>균형성장</u> ----- --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54조(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) ① 지방시대 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 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 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	제54조(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	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	2. ----- -----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지역의 <u>균형발전</u>	라. ----- <u>균형성장</u>
마.·바. (생 략)	마.·바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2조(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	제62조(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 치분권 및 <u>지역균형발전</u>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.	② ----- ----- <u>균형성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63조(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)	제63조(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<u>지역균형발전</u> 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 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.	② ----- ----- <u>균형성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5조(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생 략)	제65조(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<u>지역균형발전</u>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	② ----- ----- <u>균형성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⑦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관할 시·도가 추진하는 <u>지역균형발전시책</u>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	3. ----- <u>균형성장시책</u> ----- ----- -----
4. ~ 7. (생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⑧·⑨ (생략)	⑧·⑨ (현행과 같음)
제66조(시·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·운영) ① 시·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	제66조(시·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시·도의 지방자치분권 및	4. -----

<u>지역균형발전</u> 과 관련된 기관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·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	<u>균형성장</u> ----- ----- -----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7. 그 밖에 시·도 <u>지역균형발전시책</u>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지원과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	7. ----- <u>균형성장시책</u> ----- ----- ----- -----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7조(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생략)	제67조(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<u>지역균형발전</u>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	② ----- ----- <u>균형성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8조(지방시대기획단) ① (생략)	제68조(지방시대기획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은 고	② -----

<u><신 설></u>	<u>에 관한 업무</u>
1. ~ 3. (생 략)	2.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·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
4. 그 밖에 지방시대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및 소관 <u>지역균형발전시책</u>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업무	3. ~ 5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④ (생 략) ⑤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<u>지역균형발전정책</u> 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<u>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</u> 를 설치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	6. ----- -- <u>균형성장시책</u> ----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 <u>균형성장정책</u> ----- ----- <u>균형성장지원센터</u> ----- -----. ⑥ (현행과 같음)
제75조(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)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73조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<u>지역균형발전</u> 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(이하 “연차보고서”라 한다)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해야 한다.	제75조(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) ① ----- ----- -- <u>균형성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② (생 략) 제78조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)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 제78조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다
제79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)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	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.
1. 국가가 <u>지역균형발전</u> 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. 지방자치단체가 <u>지역균형발전</u> 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	제79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---- <u>균형성장</u> ----- ----- 2. ----- <u>균형성장</u> --- ----- ----
제84조(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)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<u>지역균형발전시책</u> 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	제84조(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) ① ----- <u>균형성장시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건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	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85조(차등 지원의 기준)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	제85조(차등 지원의 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그 밖에 정부의 <u>지역균형발전정책</u>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,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현황, 해당 사업의 <u>지역균형발전</u> 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	5. ----- <u>균형성장정책</u> ----- ----- ----- -- <u>균형성장</u> 에의 -----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	
연락처	(044) 205 - 3318